

외국 태생의 세입자를 위한 뉴욕 거주권

뉴욕주에서 귀하는 이민 상태에 구애받지 않고, 두려움과 보복의 불안감 없이 주택에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주가 귀하를 차별하거나 괴롭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거 차별은 불법입니다

뉴욕주에서 이민 상태에 상관없이 임대주가 인종, 종교나 신념, 피부색, 장애, 출신 국가, 성적 취향, 군복무 여부, 나이, 성별, 결혼 상태 또는 가족 상태(가구 내 자녀 유무)를 바탕으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뉴욕시에서 임대주가 외국인 신분 또는 시민권 상태를 바탕으로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주가 괴롭힐 경우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주 법률은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뉴욕주 전역의 시, 타운, 빌리지에서 임대주가 세입자를 괴롭히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대주는 난방 또는 수도 공급을 끊거나, 귀하를 아파트에서 쫓아내거나, 아파트 관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가 규제된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권리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보복은 불법입니다

임대주가 거주 차별 또는 괴롭힘에 대한 신고로 인해 귀하를 위협하거나 그 외 기타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귀하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차별 또는 세입자 괴롭힘의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 뉴욕주 인권부(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an Rights)에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및 뉴욕시 법률은 이민 상태에 상관없이 귀하를 보호합니다.

뉴욕주 인권부에 (888) 392-3644(무료 전화) 또는 TDD/TTY (718) 741-3800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웹사이트(WWW.DHR.NY.GOV)를 방문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www.nyshcr.org/Rent/>
<http://www.newamericans.ny.gov/>

질문 사항 또는 불만 사항을 처리할 때 인권부(Division of Human Rights) 또는 주택 및 지역 개발부(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어느 곳에서도 귀하의 이민 상태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Division of
Human Rights

Homes and
Community Renewal



Andrew M. Cuomo, 주지사